

이전가격 문서화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규정 (안) 안내

2008년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이전가격관련 자료를 준비한 납세자에 대하여서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.

이전가격 조정이 발생되면, 일반적으로 법인세(25%), 과소신고가산세(법인세의 10%) 및 미납부가산세(연10.95%)가 적용됩니다. 또한, 이러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추가적으로 주민세(10%)의 대상이 되며, 만약 이전가격조정금액이 국내로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배당소득 등으로 2차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

현재 과소신고가산세는,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, 만약 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참고로, 상기의 시행령에서는 과소신고 가산세의 면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
1.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신고서를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한 과정을 제시할 것;
2. 납세의무자가 위의 선택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것; 그리고
3. 상기의 정상가격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·보관할 것.

상기와 같이,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이전가격조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, 그 전제조건이 상호합의 또는 일방적 이전가격사전승인이 체결되어야만 하므로, 비록 납세자가 이전가격문서를 구비하고 있었더라도, 상호합의 또는 이전가격사전승인이 없을 경우,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없었습니다.

이번 과소신고가산세와 관련된 개정안은 만약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과 관련한 입증자료를 보관·비치한 경우로서, 동 산정방법의 선택·적용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개정 (안)
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[가산세 적용의 특례]

납세자가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 (가)대통령이 정하는 자료를 보관·비치하고 동 방법의 선택·적용에 있어 (나)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(신설)

상기 신설규정의 적용시기는 동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, 경정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

구체적인 필요서류와 범위 및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시행령으로 명확하게 규정될 예정이지만,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사업의 개요, 국외특수관계자 거래내역,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한 기능분석내용, 산업분석 내용,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정이유 및 기타 다른 방법의 제외이유, 비교가능거래 및 회사의 선정과정 등과 관련한 이전가격분석자료를 매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구비하고 있을 경우에만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.

시사점

한국의 새로운 문서화 지침과 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규정의 신설은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이전가격문서화 규정 및 조사강화 추세에 맞추어 한국 내 납세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① 해외 자회사와 특수관계거래가 있는 국내기업

- 본사 기준에서 일관된 문서화를 실시함에 따라 본사를 포함한 해외 관계회사들의 이전가격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, 이전가격문서화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만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이전가격 과세 시에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를 통해 과세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한국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에 따라 본사에서 일관되게 마련된 이전가격문서는 거래상대방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 특수관계자의 이전가격 문서화에 상당부분 활용될 수 있으므로, 해외 현지법인별로 별도로 이전가격문서를 준비하는 것보다 전사적인 관점에서 문서화 부담과 비용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.

②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

-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경우, 세무조사 시 항상 이전가격부분이 주요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. 이번 국조법 개정에 따른 이전가격문서화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이전가격 과세위험을 줄이고, 이전가격 과세 시 가산세 면제를 통해 과세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입니다.
- 해외 본사차원에서 구비된 이전가격 문서가 있을 경우,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내 이전가격문서화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한국의 새로운 이전가격문서화 지침은 납세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,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이전가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삼일회계법인은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문서화 규정의 신설작업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새로운 사항이 있을 때마다, 즉시 그 내용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, 언제든지 아래 삼일회계법인의 이전가격전문가들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.

이희태 상무

Transfer Pricing Partner
Tel: 82-2-3781-9083
e-mail: htlee@samil.com

Henry An 상무

Transfer Pricing Partner
Tel: 82-2-3781-2594
e-mail: henryan@samil.com

주정일 상무

Transfer Pricing Partner (일본담당)
Tel: 82-2-709-0722
e-mail: jijoo@samil.com

김상운 상무

Transfer Pricing Partner (일본담당)
Tel: 82-2-709-0789
e-mail: swkim@samil.com

강신종 상무

Transfer Pricing Partner (금융담당)
Tel: 82-2-709-0578
e-mail: sjkang@samil.com